

독일의 2009년 자전거관련법 개정과 자전거의 차도이용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자전거 도로를 차도에 설치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 및 전문가 조사결과 안전성 및 편의성 등에서 기존 보도상 자전거도로 보다 월등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2. 독일

독일에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칙은 “도로교통규칙(StVO)” 과 동규칙에 관한 “행정 명령(VwV-StVO)” 에 기초하고 있다. 이중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행정명령이 적용 되었는데 개정된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보도가 충분히 넓고,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에 자전거도로의 이용 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 차도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 서비스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은 차도의 “자전거

표 1 자전거도로의 종류

유형	차도내외	주행의무	기능	서비스 사례
자전거도로	차도외	있음	자전거 이외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가. 차도와 보도는 구조적으로 분리된다.	
자전거 전용차선	차도내	있음	자전거 이외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가. 차도와는 백색 실선으로 분리된다. 자전거 도로의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	
분리된 보행자 자전거도로	차도외	있음	자전거 및 보행자 이외의 차량 통행이 불가하며 차도와 구조적으로 백색 실선과 포장 색깔 등에 의해 분리된다.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전용 차선의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 자전거도로	차도외	있음	보도와 분리되지 않은 통행방식	
자전거 보호차선	차도내	없음	차도와 백색 점선으로 분리되며, 보도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내	없음	자전거 교통이 많은 도로 구간 또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간선 도로로 정비되어있는 도로 구간. 자동차의 진입은 가급적 도로변 거주자로 제한	
자전거가 반대 방향으로 주행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	차도내	없음	자전거와 차량통행방향 반대로 운영 특히 출입구에서 자전거를 유도하여야 하며, 차량이 알기 쉽게 특별 배려 필요	
자전거 주행 가능 버스전용차선	차도내	없음	버스와 자전거가 버스 전용 차선을 주행	
자전거 주행 가능 보도	차도외	있음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보호 차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보도를 “자전거 통행 허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가 보도를 주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 일방통행 도로를 자전거의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즉, 자전거가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 가능한 일방통행도로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자전거는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자동차의 신호를 준수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도로구조령을 개정하여 자전거도로의 차도통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1970년대 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도입하여 이후 2005년까지 유지해왔으며, 2005년에 본 구조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일본의 자전거전문가는 “일본의 자전거정책중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2009, Hiroataka Koike)

즉, 개정된 도로구조령은

도로 구조령 2-7-1: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확보에 있어서는 차로와 독립하여 보행자공간과 자전거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분리가 바람직하다. 또한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로 구조령 2-7-2 제10조 : 자동차 및 자전거의 교통량이 많은 제3종 또는 제4종의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도로의 양쪽에 마련하도록 한다. 단, 지형의 상황 그 외 특별한 사유에 있어서는 예외

4. 의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의 종류에 대한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개정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도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에서의 법개정에 대비하여 기존 자전거보행자겸용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도로는 과감히 지정을 철회하고, 추가로 건설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